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명확화 등〉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1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명확화	3
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정비	7

I. 개요

1. 김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30.
- (3) 회 부 일 : 2024. 10.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품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명확화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인 ‘자발적 협약’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생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u> <u>재료 · 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u>
<u>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u> <u>재료 · 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u>	<u>3. 환경부장관-----</u> ----- ----- -----

·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 재료 · 용기 3. (생략) ③ ~ ⑧ (생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2조¹⁾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 등 6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폐기물부담금 개요 및 부과 대상]

□ 개 요

- 유해물질 함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93년~)

□ 적용 대상

- (산정기준) 환경에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으며, 재활용의 기술성과 경제성이 없는 품목
- (품목) ① 살충제 · 유독물 용기, ② 부동액, ③ 1회용 기저귀, ④ 담배, ⑤ 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⑥ 고흡습성수지 아이스팩

※ △ “껌” 품목은 사용량 감소 및 배출문화 정착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24.7월)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4.3월)」 후속조치

- (납부자) 해당품목 제조 및 수입업자

자료 : 환경부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한편, 동법 제12조제2항²⁾에 따르면 ① 제16조³⁾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②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이 됨.

그러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 제2호의 주어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임에 따라,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제품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호한 점이 있어,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

동 조항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⁴⁾와 법령정비 권고사항⁵⁾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해석상 혼란을 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22-0115, 회신일자 2022.5.27.)

5)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지하기 위하여 두 경우를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

재료·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시 확인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고, ②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희망시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③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에 따른 기간을 3년(2회 이상 시 5년)으로 명시하고, ④ 사용비율 적정 표시여부 사후 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u>재생원료를</u>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u>제조사등은</u>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u>제품·용기에 표시</u> 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 확인) ① <u>환경부장관은</u> <u>재생원료</u> ----- ----- <u>제조사등이</u> <u>사용비율을</u> <u>표시하고자 하는 경우</u> ----- <u>확인</u> -----. ② 제1항에 따라 <u>재생원료 사용비율을</u> <u>표시하고자 하는 자는</u> <u>환경부장관에게</u> <u>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u> <u>신청</u> <u>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재생원료</u> <u>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u> <u>받은 자는</u>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14.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u>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u>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 ----- ----- ----- -----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확인</u>을 받은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개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제도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ESG 경영 요구에 따른 친환경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향후 해외 재생원료 인증체계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시 해외 재생원료 사용 인증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⁶⁾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제도]

□ 도입 취지 및 배경

-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서의 홍보수단 제공 및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도입(‘24.3.29. 시행)

□ 제도 주요내용

- ① 친환경 소비 유도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기능
 - (최소비율) 식품용 PET병 및 기타 제품·용기 10%, 전기·전자 제품 20%
- ② 기업 자율 선택사항으로 추가 부담 최소화
 - 친환경 마케팅, ESG 경영요구 확산 등에 따라 기업 필요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6)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EU : (포장) ‘30년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비율 30% 목표 / (배터리) ‘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미국 : (캘리포니아주) ‘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15% 이상) 의무화

③ 해외 재생원료 사용실적 인증체계를 활용하여 호환 연계

- 해외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국제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확인과정에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장기적으로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인’과 해외 ‘재생원료 인증’ 상호 연계

ISCC+(EU)	GRS(미국)	RCS(미국)
		

자료 : 환경부

2) 검토의견

현행법 제33조의2⁷⁾에 따르면,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4⁸⁾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부 예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개정안은 2024년 3월 최초 제도 시행 이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로, 현행 하위 법령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바 내용상 문제는 없어 보임.

또한, 법체계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확인 주체, 신청 대상 및 표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개정안은 현행 「순환경제사회법」의 순환자원 인
 정제도의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순환자원 인정제도 입법례와 비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 확인) ① <u>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u>확인</u>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u>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 ⑧ (생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546